

## 2024년 경정승진 시험 주관식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문제 I] 다음을 읽고 설문에 답하시오.(50점)

- (1) 甲이 개인사업주로서 경영하는 X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乙이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 P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 및 범행 기간 내 수술실 CCTV 영상을 압수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압수·수색영장에는 법이 정한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나, 판사의 서명·날인란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영장 집행 당시 이를 알지 못한 P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甲과 乙이 참여한 가운데 ①수술실 CCTV 영상 복제본을 압수하였다. 이후 P는 乙을 소환하여 신문하였고, 압수한 ①을 바탕으로 ②乙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 (2) 한편 P는 며칠 뒤 X병원에서 2023년 10월 20일 전신마취 후 수술을 받았던 A로부터 ‘X병원의사 丙이 자신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P는 乙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압수한 증거 ①에서 丙의 의료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X병원을 방문하였으나 丙은 부재중이었다. 전화상 丙으로부터 진료실 출입허락을 받은 P는 진료실 책상 위에서 丙이 개인적으로 ③A의 수술 CCTV 영상 중 주요장면을 출력해 놓은 사진 10장을 발견하였고, 이를 간호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하였다. 다음 날 P가 丙을 피의자로 소환하자, 모든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한 丙은 신문 전에 스스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P는 ④丙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담당검사는 丙을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위 ①, ③, ④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丙에 대한 증거는 ①, ③, ④가 전부였다. 공판기일에 출석한 丙은 법정에서 ④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백하면서 제출된 증거 모두에 대해 증거동의 하였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사실관계 (1)에서, P가 행한 압수·수색은 적법한가? (5점)  
[현장강의 Secret 사례X노트 49면, 1순환 진모 1회, 2순환 진모1회]
2. 사실관계 (1)에서, ①, ②를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1순환 진모1회, 2순환 진모 1회]
3. 사실관계 (2)에서, 법원은 丙의 법정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20점)  
[최신3개년 기출 5번, 6번, 9번, 11번]
4. 사실관계 (2)에서, ④에 담긴 丙의 진술을 통해 甲이 CCTV의 관리·감독에 소홀하였음을 확인한 검사는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에 따라 甲을 기소하면서, ④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공판기일에 출석한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④에 대해서 증거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도 부인하였다. 그러던 중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던 丙이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이 경우에 ④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5점)  
[현장강의 Secret 사례X노트 190면, 최신3개년 기출 5번, 양벌규정/현장강의 예시사례]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5점)
2. 함정수사 (25점)

## ■ 사례 해설

### I. 설문(1)에 대하여 (5점)

#### 1. 영장의 유효성 (2.5점)

가.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 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나. 이 사건 영장은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9.07.11. 2018도20504).

#### 3. 수술실 CCTV 영상복제본 압수의 적법성 (2.5점)

가. 이 사건 영장에는 비록 날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은 외관상 분명하고, 당시 수사기관으로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대판 2019.07.11. 2018도20504).

나. 그렇다면, 위 수술실 CCTV 영상 복제본에 대한 압수는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예외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II. 설문(2)에 대하여 (10점)

## 1. 문제점 (1/10점)

- ① CCTV 영상복제본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복제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은 무엇인지와 이른바 대리수술의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인정요건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 ②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전문법칙 예외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로서 파생된 2차증거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다.

## 2. ① 수술실 CCTV 영상복제본의 증거능력 (6.5/10점)

## (1)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1.5점)

- 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제308조의2), 이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는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경우가 아닌 한 증거로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독수과실의 원칙).<sup>1)</sup>
- 나. 전술한 바와 같이 ① CCTV 복제본은 부적법한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유효성을 선의로 신뢰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甲과 乙이 참여한 가운데 이를 압수한 점, 간인을 포함한 다른 요건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2) 복제본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1점)

실질적 직접주의에서 파생된 최량증거의 법칙에 따라, 대체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는 ㉠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 원본의 제출이 불능이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 ㉢ 원본을 정확히 전사하였을 것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설문상, 최량증거의 법칙의 충족여부는 명백하지 않은바 검사가 이를 입증하였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4점)

설문에서 촬영된 CCTV 촬영본은 범행현장을 촬영한 연속사진으로서 이른바 현장사진에 해당한다. 현장사진의 증거능력요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 가. 학 설 (1점)

- ① 현장사진은 비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비진술증거설,
- ② 현장사진은 사실보고기능이 있으므로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진술증거설,
- ③ 현장사진은 비진술증거이기는 하지만 검증조서규정을 유추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검증조서유추설이 대립하고 있다.<sup>2)</sup>

## 나. 판 례 (1.5점)

대법원은 간통현장에서 찍은 나체사진 중 날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추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비진술증거설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97도1230).

1) 수술실에서의 촬영을 사인의 위법수집증거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2023.5.19. 개정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례(2)와 같이 동의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지 않는 한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

2) 검증조서 유추설은 작성자를 불문하고 언제나 제312조 제6항이 적용된다는 견해와 수사기관이 작성한 경우에는 제312조 제6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되어야 하나 사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제313조 제1항(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규정유추)이 적용된다고 보는 입장(다수설)으로 나뉘어 있다. 주의할 점은, 어느 경우나 증거능력인정요건은 작성자의 공판정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의 인정이라는 점이다.

## (3) 검토 및 사안의 적용 (1.5점)

현장사진은 피사체의 존재자체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비진술증거에 해당하지만 조작이나 편집의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검증조서유추설). (이에 더하여 규칙 제134조의8에 따라 재생·시청이라는 증거조사방식까지 거쳐야 채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① CCTV 촬영영상은 검증조서에 준하여촬영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3. ② 乙의 자백을 기재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10점)

## (1) 위수증과 독수과실 (1점)

가. 위법수집증거와 이로부터 파생된 2차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② 乙의 자백이 기재된 피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① CCTV영상복제본을 토대로 수집한 증거이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 내지 2차증거로 볼 수는 없다.

## (2) 전문법칙의 예외 (1점)

가. 사법경찰관 P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인바 증거동의를 없는 이상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제310조의2).

나. 따라서 P작성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乙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다. 설문상 전문법칙 예외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의 제시가 없는바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라. ② 乙에 대한 피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4. 사안의 해결 (0.5/10점)

① CCTV 촬영 복제본은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최량증거의 법칙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작성자의 공판정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고

② P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신조서는 위법수집증거 내지 2차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 III. 설문(3)에 대하여 (20점)

## 1. 문제점(1/20점)

丙의 법정 자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백과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능력 있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하 자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①③의 증거 및 丙의 자백을 담은 ④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공판정자백의 경우에도 별도로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2. 공판정 자백과 자백의 보강법칙(1/20점)

기소인부절차나 피고인증인제도가 있는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판정자백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유죄판결을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공판정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도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3. ①③④증거의 증거능력 (17/20점)

(1) ① 증거를 丙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9점)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면,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23.06.01. 2018도18866).

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17.12.05. 2017도13458).

라. ㉠ 설문에서 P는 압수한 ①증거는 乙의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허가없는 영상촬영이라는 丙의 범죄사실과는 범죄사실자체 또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죄사실이라거나 그에 대한 동기·경위, 수단·방법 등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또한 피의자 乙에 대한 영장으로 압수하였다는 점에서 해당사건(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이 아닌 丙과 인적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마. 그렇다면, 乙의 의료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①증거는 丙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 ③ 증거를 丙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5점)

## 1) 임의제출 자체의 적법성과 문제점 (1.5점)

가. 유류물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제218조).

나. 설문에서 ③ A의 수술영상중 출력해 놓은 사진 10여매에 대해서는 일견 간호사를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또한 특별히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임의제출물 압수 자체는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위수증과 독수과실의 원칙 (2점)

가. 적법절차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독수과실의 원칙). 그다만, 실제진실발견의 필요성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설문에서는 비록 피해자 A가 고소를 하여 별도로 丙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전화상으로 비록 丙으로부터 출입을 허락받기는 하였으나, 丙에 대한 의료법위반사실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의에 기초한 승낙으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 3) 사안의 적용

③ 간호사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사진 10장은 위법수집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3) ④ 丙의 자백을 기재한 피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점)

설문상 丙은 스스로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④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①증거와 이로부터 파생된 2차증거인 ③증거를 토대로 자백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丙은 신문 전에 스스로 자진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또는]

가. 丙의 자백을 기재한 사경 P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이나 丙이 증거동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설문상 丙은 스스로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④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①증거와 이로부터 파생된 2차증거인 ③증거를 토대로 모든 것이 들통났다면 체념한 채 자백한 것으로서 이 역시 2차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sup>3)</sup>

3) 2차증거로서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점이 2점으로 올라가고 별도로 사안의 해결은 배점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설문에서 ④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설문(4)를 부드럽게 서술하기 위함일 뿐이다.

## (4)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5점)

가. 丙의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①③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내지 그로부터 파생된 2차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제308조의2), 피고인 丙이 증거동의를 하고 있다.

나. ㉠ 위법수집증거도 증거동의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익형량설) 등이 대립된다.

㉡ 판례는 영장주의 위반의 위법수집증거나 고문이나 잠을 채우지 않은 위법사유가 경합된 자백 등에 대해서는 증거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당사자에게 참여기회를 주지 않는 등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동의를 허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생각건대, 증거동의를 신속한 재판을 추구하기 위해 단지 입법정책적으로 마련된 제도인바, 헌법상 적법절차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①③④증거에 대한 증거동의를 효력이 없고,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丙의 피고사건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제308조의2).

## 4. 사안의 해결 (1/20점)

가. 설문에서 ①③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丙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나. 한편, 보강증거는 자백과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④증거는 丙의 자백에 다름없어 丙의 공판정자백과 독립성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丙의 자백만 있는 이 사건에서 법원으로서 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라 丙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헌법 제12조 제7항, 법 제310조).



## IV. 설문(4)에 대하여 (15점)

## 1. 문제점 (1/15점)

사경작성P 작성 丙에 대한 피신조서를 위법수집증거로 보면 이를 甲의 공소사실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丙에 대한 피신조서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전제하여 그 전문법칙의 예외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선행하여 丙과 甲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 2. 丙과 甲의 관계 (1/15점)

의료법 제91조는 사용인이나 종업원의 의료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규정하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양벌규정에 따른 종업원과 사업주의 관계는 필요적 공범인 대항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사경 P작성 공범 丙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6/15점)

- ①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문법칙 예외요건에 대해서는 ㉠ 제312조 제3항은 그 문언상 피고인 자신에 대한 피신조서만을 의미하므로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제312조 제4항설)과 ㉡ 위법수사예방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피고인의 내용인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제312조 제3항설)가 대립된다. 제312조 제3항설 중에는 원진술자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 ② 판례는 제312조 제3항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제312조 제3항설의 입장이며, 이러한 법리는 대항범인 필요적 공범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 ③ 생각건대, 제312조 제3항설이 타당하다. 제312조 제4항설을 취할 경우 내용이 부인된 사경작성 피신조서가 공범에게 전용되어 증거로 사용됨으로써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때문이다.
- ④ 그렇다면, 사경작성 丙에 대한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甲이나 그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바, 당해피고인 甲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 3. 사경작성 공범피신조서와 제314조의 적용여부 (6/15점)

- ① 원진술자 丙이 사망한 경우 등에 있어, 사경작성 공범피신조서가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적극설과 ㉡ 위법수사예방장치인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상 제314조는 적용될 수 없다는 소극설이 대립된다.
- ② 판례는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당연한 결과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제314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소극설을 취하며, 이는 대항범인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 ③ 생각건대, 위법수사의 예방장치인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경작성 공범피신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범의 불출석유도하여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폐단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④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사경작성 공범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비록 원진술자 丙이 질병으로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甲의 피고사건에서 제314조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제310조의2).

4. 사안의 해결 (1/15점)

사경P작성 丙에 대한 피신조서는 甲의 피고사건에 증거능력이 없다(제310조의2).